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지침

제정 : 2009. 4. 3.

1차 개정(부분개정) : 2010. 8. 1.

2차 개정(전면개정) : 2012. 2. 1.

3차 개정(부분개정) : 2014. 1. 1.

제1조 【목적】

본 제재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쟁관련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조치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당사 소속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적용되며, 협력업체 및 관계사에서 파견되어 사실상 당사의 관리·책임 아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지침에 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 및 관계사에 의뢰한다.
- ② 본 지침은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자율준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③ 본 지침은 범위외 행위시점으로부터 3년이, 범위외 사실 발견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쟁관련 법률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경쟁당국에서 소관하는 모든 법률을 말한다.

나.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경쟁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법 위반자라 함은 경쟁당국에서 소관하는 법률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라. 공정거래 주관부서라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마. 경쟁당국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 ① 본 지침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보고에 따라 임시 자율준수위원회의 개최
 2.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일련의 CP활동에 대한 권리를 자율준수관리자에 부여
- ② 본 지침과 관련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4회 '공정거래 자율점검'의 시행을 공정거래 주관부서에 지시하고,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 구성원에 보고
 2. 연간 2회 이상 파트너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 구성원에 보고
 3. 법 위반사항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보고 후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심각한 법 위반사항은 대표이사에 보고 후 자율준수위원회의 개회를 요구
 4. 제재조치에 대한 주관부서의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5.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6. 기타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CP활동
 7. 법 위반사항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보고 후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심각한 법 위반사항은 대표이사에 보고 후 자율준수위원회의 개회를 요구
- ③ 본 지침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주관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연간 4회 '공정거래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3. 제재조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재조치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
 4.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법 위반자 제재조치 결과를 조직원에 공유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시하는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일련의 CP활동

제5조 【제재의 원칙】

- ① 당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법위반 사항의 점검결과 적발된 법 위반자 대하여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그 조치의 범위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를 벗어날 수 없다.

제6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①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본조 제 3항 '제재기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를 위한 '임시자율준수위원회'를 즉시 개최한다.
 - 가.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도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 나. (경쟁당국에 의해 사건화 된 경우)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심

히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경쟁관련 법률의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본조 제3항 '제재기준'에 따라 법 위반자에 경고장 발부 또는 제재절차를 위한 임시자율준수위원회를 개최한다.

가.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다. 공정거래 자율점검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명령이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

② 경쟁관련 법률을 위반한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서)경고

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임원 또는 담당팀장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내부제보가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2. 법위반 방지 특별교육

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경쟁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나. 경쟁관련 법률의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기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조치 외에도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③ 제재기준

본 조에서 정한 인사제재의 내용이 '풀무원 바른마음 운영규정', '풀무원 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기준'과 상반되는 경우 전사규정을 우선한다.

| 구 분 | 1회 위반 | | 2회 위반 or 1회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 | 3회 위반 |
|-----|----------------|----------------|-----------------------------|----------------|----------------|
| | 조 치 | 시정조치 불이행 | 조치 | 시정조치 불이행 | 조치 |
| 행위자 |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 시말서 제출 |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시말서 제출 |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
| 부서장 | | 시정조치 경고장 발부 | 시정조치 경고장발부/ 시말서 제출 | 시말서 제출 | 인사징계 위원회 회부 |

제7조 【제재의 절차】

- ①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법위반 제보 접수 등에 따라 임직원의 법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1차 조사에 착수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주관부서의 1차 조사결과 법 위반자의 행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최초 법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에 경고장을 발부한다.
- ③ 상기 3)항에 따른 자율준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시말서를 넘는 제재처분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내용을 인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며, 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위반 행위자는 처분을 받도록 한다.
- ④ 상기 2)항의 1차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1회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2회이상 위반시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에 임시자율준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조치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 ⑤ 구체적인 제재절차는 [별표1. 법위반 제재 Process]에 따른다.

제8조 【심사】

경쟁관련 법률 위반 임직원에 대한 본 제재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시말서 이하의 처분은 자율준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조 【기록관리】

본 지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과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지침은 인트라넷 CP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당사의 전 임직원과 공유한다.
2. 본 지침은 200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3. 본 지침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본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법위반 제재 Process】

